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7
----------	------

발의연월일 : 2016. 9. 1.

발의자 : 김관영 · 황주홍 · 주승용

박선숙 · 박용진 · 박주현

정동영 · 이동섭 · 김경진

최경환^{한국} · 김광수 · 김종회

채이배 · 김성식 · 김삼화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함.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 받음. 이번 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상의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